

[홍콩] 2018년 8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(통관/검역/라벨링*/수출현안)

□ 주요내용

○ 홍콩, 수입산 백미 샘플에서 법적 허용 기준 초과한 카드뮴 검출

- 2018년 8월 9일, 홍콩 식품환경위생국 식품안전센터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된 백미제품 샘플에서 금속성 유해물질인 카드뮴 검출
- 홍콩 식품안전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품감독 프로그램(Food Surveillance Program)의 감시 하에 상기 샘플을 세부 조사한 결과 0.16ppm 수준의 카드뮴 함유, 이는 홍콩 식품 불순물(중금속 중독) 규정에 따른 법적 허용치인 0.1ppm을 초과
- 홍콩 식품 불순물(중금속 중독) 규정에 따르면 법적허용치 이상의 금속 오염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며, 5만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이 명시됨
- 식품안전센터는 수입업자에게 관련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힘

⇒ 시사점 : 현재 홍콩은 식품불순물(중금속중독) 규정하에 중금속을 관리 및 통제하고 있으므로 한국 수출업자들은 불순물 검출사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

*출처 : 홍콩식품안전센터 (2018. 8. 10)

관련홈페이지 : <http://www.fehd.gov.hk/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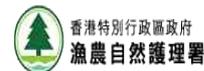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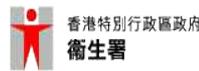
II

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□ 통관제도 관련법 및 규정 일반

- 홍콩으로 수입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수입허가 없이 화물의 수취가 가능
- 쌀, 냉동육, 가금류 등 일부 품목만 수입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, 수출 후 14일 이내 수출입 신고서를 내면 통관 완료
- 통관 시 검사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홍콩세관의 지시사항을 따라 진행하거나, 관련 절차를 선사나 운송사·관할세관 등에 문의할 수 있음.
- 홍콩 통관 및 검역관련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
 - 수출입 일반 : Import and Export(Registration) Regulations(Chapter 60)
 - 관세 일반 :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(Cap. 109)
 - 식품검역 일반 :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(Cap. 132)

■ 홍콩의 식품위생 관련 기관 로고 ■



*주 석 : 왼쪽부터(상위기관) 식품위생국, 식품환경위생서, 위생서, 어·농업자연보호서

*자료원 : 각 기관 홈페이지

III

통관문제사례

- 해당사항 없음